

의안 번호	제3617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5월 2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6월 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‘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’ 을 신설함
(안 제6조제5호)
- 나.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, 선정 대리인 신청·통지에 관한 사항,
선정 대리인의 의무·우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28조의2 ~ 제28조의4)
- 다. 「김포시 시세 기본조례」의 선정 대리인에 관한 조항 삭제
- 라. 그 밖의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